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편의시설 설치 시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의성 고려〉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08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시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 고려(안 제7조의2 등)	2

I. 제안경위

2024년 8월 30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사유로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의 인분 봉지 등이 대표적 사례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시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 고려 (안 제7조의2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 ----- ----- ----- -----, -----사업주는 <u>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u>이용조치에 관한 세부내용 및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 ----- ----- -----.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7조의2제1항-----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사업주가 설치·이용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는 시설로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는 3개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이용 관련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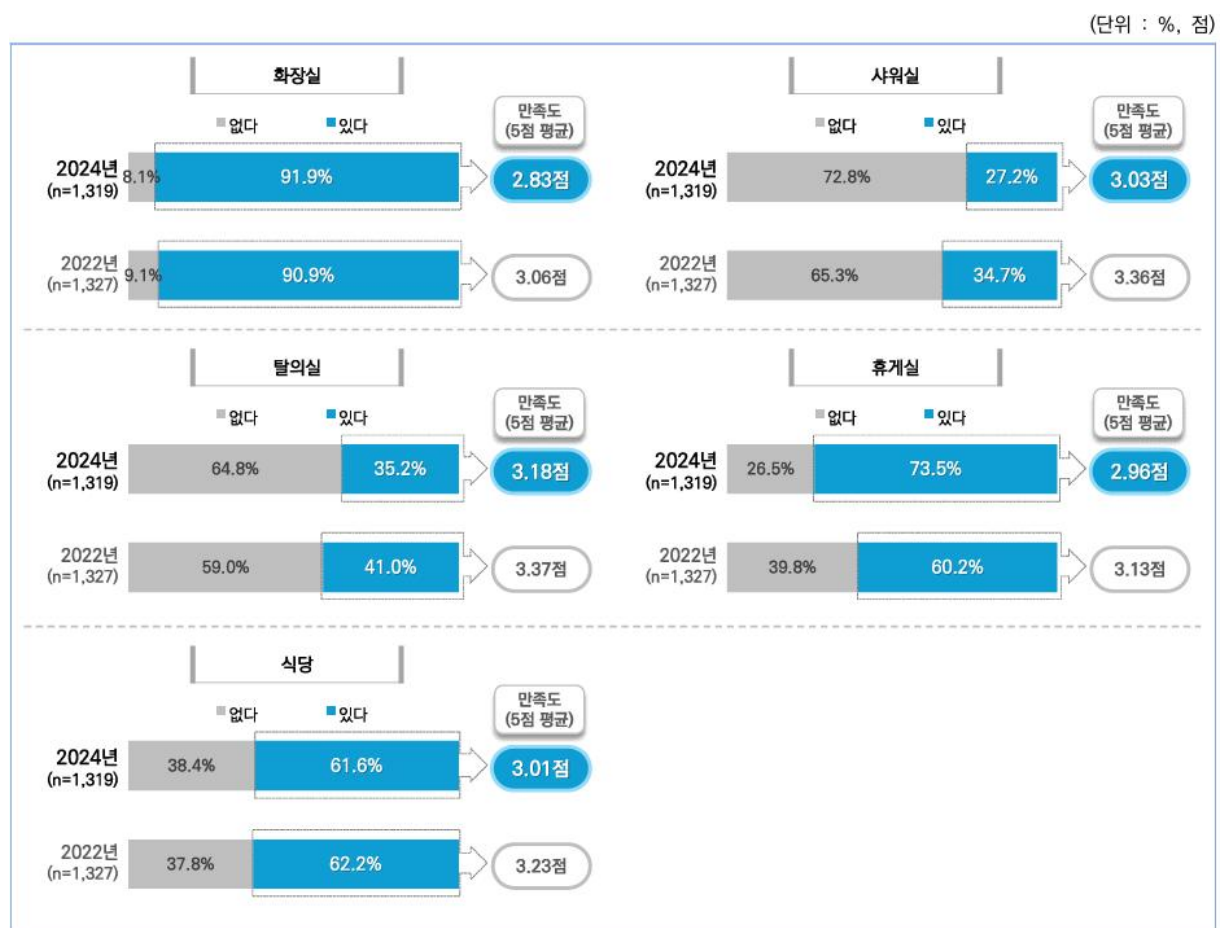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화장실의 경우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고, 남녀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식당의 경우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며, 탈의실을 설치·임차하는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남녀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 구분하여 설치하는 등의 내용임.¹⁾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1)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건설현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조치 기준 참조

결과에 따르면, 화장실과 휴게실의 경우 보유 비율이 2022년 대비 증가하고 각각 91.9%, 73.5%의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어 많은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점대 수준으로 낮고 2022년 대비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샤워실·탈의실의 경우 절반이 되지 않는 현장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2022년 대비 감소하였음.

<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유무 및 만족도 >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8.

이와 같이 건설현장 편의시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시설의 질 개선이 요구되는바, 현장 종류별로 살펴보면 특히 대규모 건축

현장의 시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편의시설 중 화장실의 수가 적고 거리가 멀고 청결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식사가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었음.²⁾

< 건설현장 유형별 편의시설 만족도 현황 >

(단위 : 점)

구 분	토목현장	대규모 건축현장	소규모 건축현장	플랜트 현장	기타	평균 (5점 평균)
화장실	2.90	2.75	2.67	2.97	2.99	2.83
샤워실	3.28	2.90	3.04	3.09	3.50	3.03
탈의실	3.34	3.05	3.14	3.29	3.49	3.18
휴게실	3.00	2.89	2.96	2.98	3.28	2.96
식당	3.21	2.98	3.12	2.86	3.25	3.01

* 토목현장 : 도로, 철도, 다리, 터널, 댐 준설

대규모 건축현장 : 아파트, 학교, 관공서, 병원 등

소규모 건축현장 : 단독주택, 연립주택, 소규모상가 등

플랜트현장 : 발전소, 반도체, 석유화학공장 등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8.

화장실, 탈의실, 식당 등의 시설은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이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령상 시행규칙에서 건설

2) 건설근로자공제회,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8. 251면.

현장 편의시설 설치·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도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건설공사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 유형이 다양하며, 면적, 형태 등에 따라 현장 여건이 다르고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도 현장 여건이 수시로 변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대한건설협회는 의무규정에 ‘이용 편리성’, ‘충분히 고려’ 등의 주관적 판단요소가 들어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35

참고

건설현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조치 기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로 산출하되,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교대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교대 근로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사업주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근로자 수는 공동 사용하는 각 사업주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총계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식당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